

입주 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시직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chs)의 입주자 공고문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청주시 공동주택과 - 8141호(2024.02.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15-8번지 일대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3~35층 26개동 총 2,330세대(조합원 517세대, 임대 118세대 및 보류지 20세대 제외) 중 일반분양 1,675세대
[특별공급 775세대(기관추천 141세대, 다자녀가구 78세대, 신혼부부 288세대, 노부모부양 45세대, 생애최초 223세대 포함)]
입주시기 : 2027년 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2 공급일정

Table with columns: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체결

3 공급규모 및 공급금액

Table with columns: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 전용 면적),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재, 기타공용 면적(이하 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로 표기하였으나, 제곱미터(m)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0.3025 또는 ㎡÷3.3058)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m)까지 표기하며(이하)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면적 합산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각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자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필적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수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주차장, 전기기계실,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복식시설(면적외집, 경로당 등)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식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통행 등) 등은 실시공사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자칭층에 있는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부대복식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소수점으로 동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Table with columns: 약식 표기, 동·호 구분, 세 대 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분양가), 계약금(10%) (1차, 2차), 중도금(6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잔금 (30%)

Table with columns: 약식 표기, 동·호 구분, 층 구분, 세대 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분양가, 계약금(10%) (1차, 2차), 중도금(6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잔금 (30%)

분양대금 납부계약 및 납부방법

Table with columns: 구분, 계약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상기의 계약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대시보중상자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분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입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합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목재' 납부계약이 상이하오니 입금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약은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 140-014-332515 / 예금주: 사직3구역주택개발청비사업조합)로 관리됩니다.
세대별 납부계약(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금융거래정보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무동등 입금 가능)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아울림"으로 정확히 기재)
다인 명의 동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소수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신청자격

- 특별공급 신청자격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외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필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에 갖추어야 합니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전청약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재분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속한 세대원 포함)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 전까지 민간 사전청약요건에 당첨된 주택의 사업주체에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신청을 완료하고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 전까지 한부모동원 청약홈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었을 경우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 1호 또는 1세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해당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소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특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기간: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안정금액이 85m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안정금액이 85m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
※ 각 청약특성상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에만 청약 가능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매부양) 중 입주자자격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제외)민간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10년 이상 정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순위) 청약자격과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가능합니다.

5 기타안내

Table with columns: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Table with columns: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 통신감리, 소방감리

Table with columns: 사업주체 및 시공사, 사업주체, 시공사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위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건물주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지는 관계법령에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광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 분양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043)269-4535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시직 입주자모집공고
* 홈페이지 주소 : https://hillstate.co.kr/s/chs
* 견본주택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27-14